

핀테크와 자금세탁방지 최신 동향

('18. 3.16)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정지열 협회장





목차

*Full Ver. <http://cafe.naver.com/aml/509>

- I. 소액해외송금 업자를 위한 레그테크 고객확인 솔루션 제안*
 - 1. Introduction- 핀테크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 2. Preliminaries-금융당국의 고민
 - 3. Proposed Scheme-웹스크래핑 + 퍼지서치 + AWS
 - 4. Conclusions-고객확인 솔루션 제안

- II.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1. 총칙
 - 2.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등(*CDD 절차)
 - 3.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보고(STR)
 - 4. 거래의 거절 등
 - 5.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은행권 공통 안내문’ 시행 안내





기획재정부, 2016년11월 센○비, 코○원 등 13곳 안팎의 비트코인 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금감원에 조사 요청

핀테크업체가 소액해외송금업에 진출시 법률위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 연구

레그테크의 이용하여 '금융회사 등'의 업무효율성 증대와 법률RISK 감소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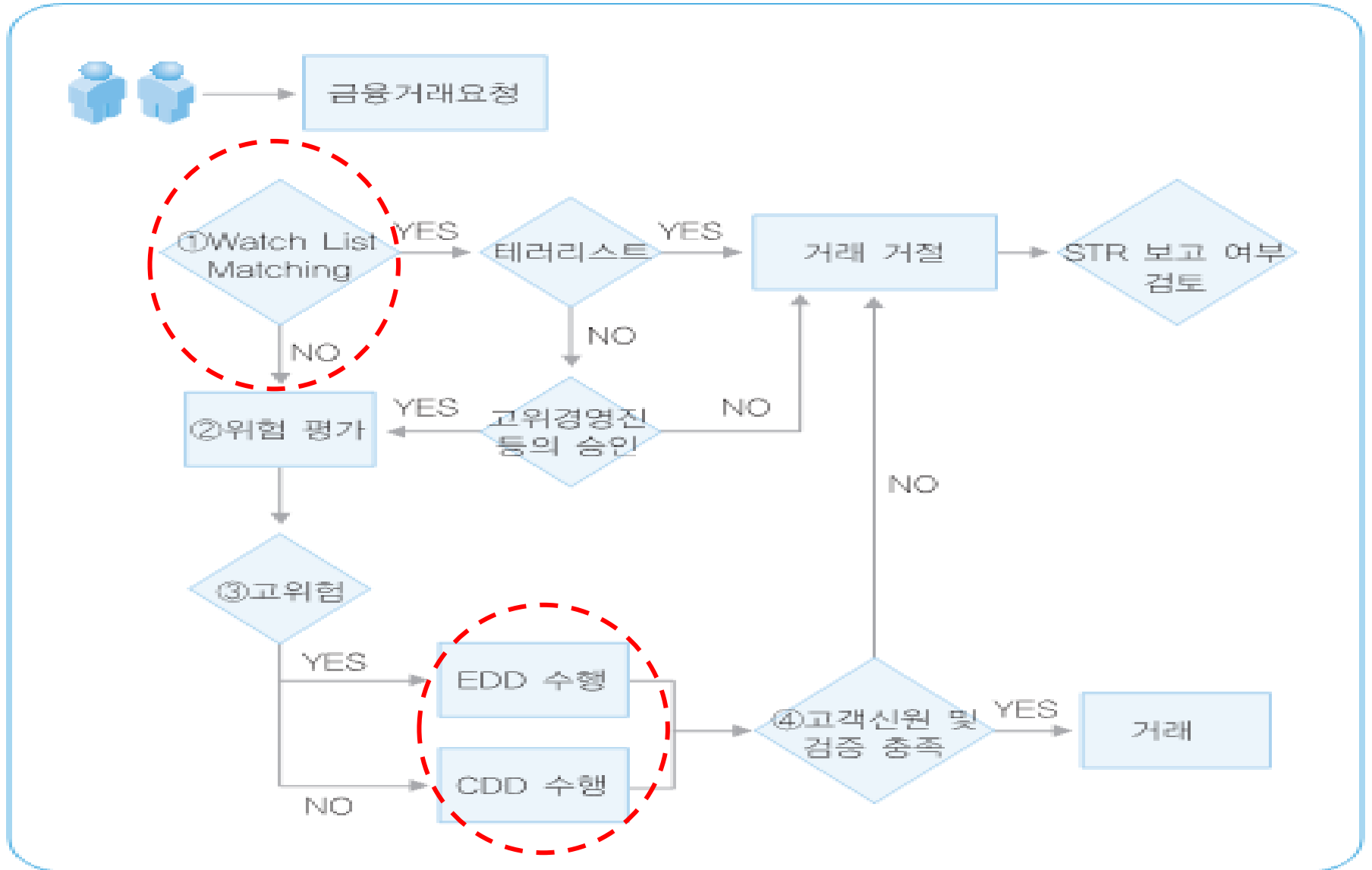
2006.4.28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국내송금서비스 제공

2015.7.1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社) 전자상거래에 따른 지급결제대행 업무 수행

2017.7.18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개정 시행, 소액해외송금업 허용



2. Preliminaries ... 금융당국의 고민





Sanction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4항(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등)

C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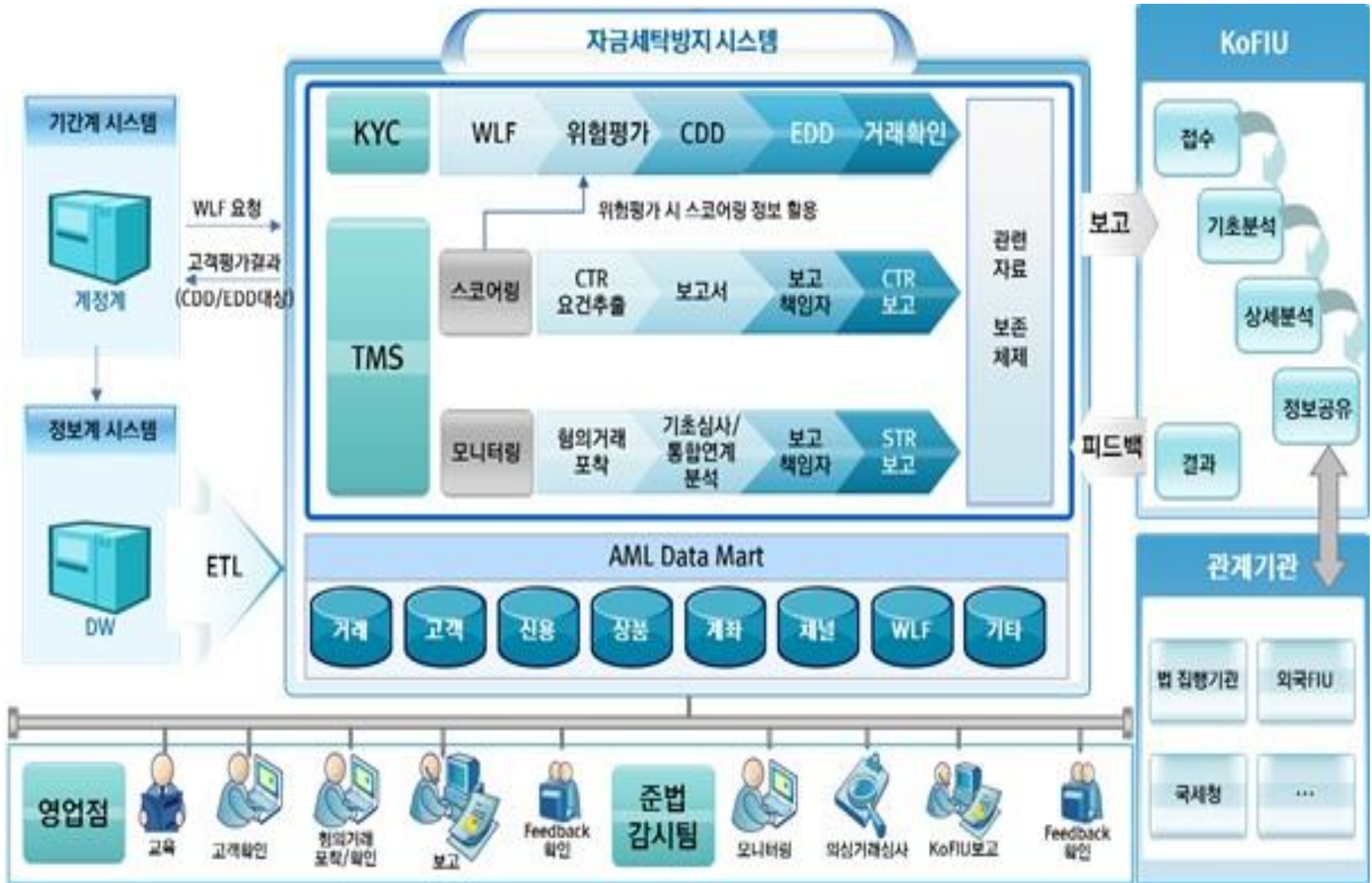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금융회사 등’

W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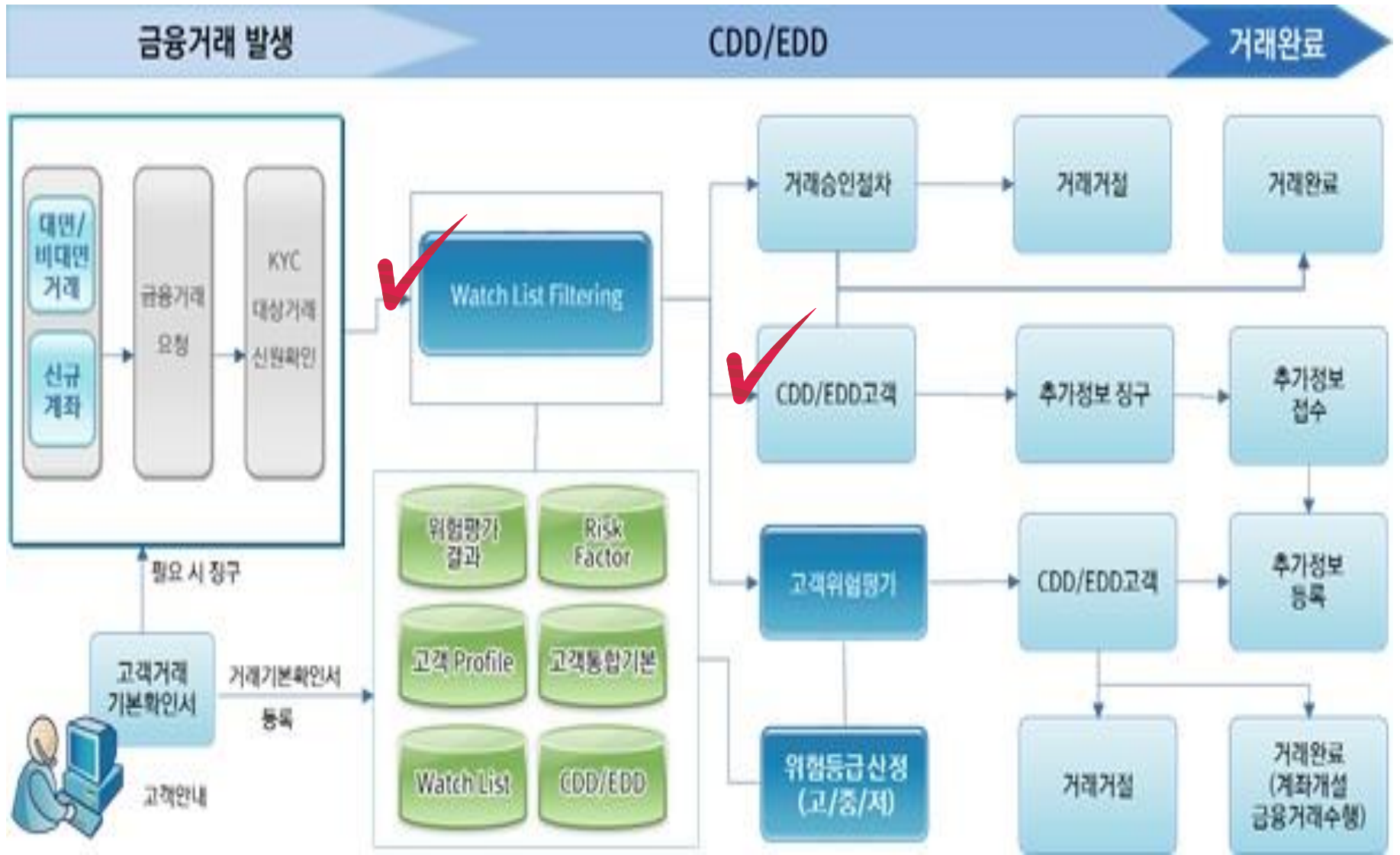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 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0조(특별주의의무 등), 제38조(신원확인) 및 제42조(추가 확인정보의 범위)



3. Proposed Scheme ... 웹스크래핑 + 퍼지서치 + AWS



3. Proposed Scheme ... 웹스크래핑 + 퍼지서치 + AWS



3. Proposed Scheme ... 웹스크래핑 + 퍼지서치 + AWS



상용패키지 구입

[장점]
완벽한WLF

[단점]
고비용 소요,
136.2M*

In house 개발

[장점]
저비용구축

[단점]
WLF/유지보수
취약

제안시스템

[장점]
저비용고품질

[단점]
인증기관
공신력



4. Conclusions ... 고객확인 솔루션 제안



4. Conclusions ... 고객확인 솔루션 제안



4. Conclusions ... 고객확인 솔루션 제안



<http://cafe.naver.com/aml>



수익 해외송금업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금융규제민원포털



통합검색

검색

금융규제 개선활동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금융개혁 현장점검

응부즈만

행정지도

규제정보

금융규제 개선건의

행정지도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예고

시행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행정지도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 시행

> 시행

연번	2018-001
제목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일	2018-01-30
최종연장일	
존속기간	2018-01-30 ~ 2019-01-29
시행여부	시행중
기관_담당부서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 기획협력팀
첨부파일	가이드라인_최종(F).hwp (0.03Mbyte)

행정지도 시행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자금세탁등의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금융회사들을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인니다





목 적

-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특금법** 하위법령 명확화
- AML/CFT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

정 의

- (**가상통화**): 전자적 방법으로 가치의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각 호는 제외)
 1.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2. 상품권 3. 게임물의 결과물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
- (**가상통화 취급업소**): 가상통화를 보관 · 관리 · 교환 · 매매 ·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취급업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



제2절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등(*CDD 절차)



가상통화취급업소 인식여부		조치 사항	
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	① 5개 위험업종 거래 내역 모니터링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 <u>*인식한 경우 ② 단계로</u> 이동	
	② 가상통화 관련 STR Alert 점검철저		
나. <u>*인식</u> 한 경우	①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서비스' <u>가입자</u>	<u>현지실사 실시</u> (※ <u>6개월</u> 마다 실사포함 EDD 재이행)	
	②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서비스' <u>미가입자</u>	가입의사가 있는 자	<u>현지실사 후 가입여부 판단</u>
		가입의사가 없는 자	<u>현지실사 실시</u> (※ <u>3개월</u> 마다 실사포함 EDD 재이행)

※ 가상통화취급업소로 *인식하는 방법

- ① 은행연합회 명단 : 2018.2.5 은행연합회 가상통화취급업소 명단 발표
- ② 은행 자체 명단 : 은행Compliance시스템內 조회화면 (*Update 정보 공지)
- ③ 영업점 창구정황 의심업소 : 은행Compliance시스템 반영



제2절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등(* EDD)



가.㉠통계청 표준산업분류

- 전자상거래 소매업(G47912), 소매중개업(G47911), 통신판매업(G47919) 등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G47919)

가.㉢금융거래의 유형

-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 과다
-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금융거래 지속적 발생
- 단 시간내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

나.㉢취급업소가 일반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관련 거래시

- 강화된 고객확인 및 금융거래모니터링 강화
- 민법상 미성년자, 외국인 관련 금융거래를 식별
-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내역 관리편의성제공 용역행위 자제





나. 인식한 경우 - [1] (고객확인 강화)

- 취급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 취급업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취급업소가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취급업소가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지 여부
- 취급업소가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을 위해 임직원 계좌 등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는지 여부
-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의 준수** 여부
-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거래모니터링 강화)실명확인 계정서비스 미구축 업소 특별주의

-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기존 의심거래보고기준(Rule)**에 근거한 모니터링 강화
-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새로운 의심거래보고기준(Rule)**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것을 검토
- 금융회사등의 고객 중 3년 내의 기간동안 **고액현금거래보고 내역이 있는 고객과 취급업소 간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인력의 지정**
-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에 특별한 주의
 - 금융회사등 고객의 **금융거래금액이나 금융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 금융회사등 고객의 **예금회전율**이 예금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등





[1] 다음의 경우 거래거절 or 해당 금융거래 종료하여야 함

-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고객이 취급업소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고객이 확인을 위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 사실상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거래거절 or 해당 금융거래 종료할 수 있음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금융거래 거절 및 종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

[4] 금융거래를 종료한 경우 취급업소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수립

- 신속한 홈페이지 공시, **취급업소와의 가상계좌 정리방안 마련** 등





1. 목적

：'은행권 공통 안내문'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연합회 회원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

2. 서식 및 사용 시기

서식명	사용 시기
① 가상통화 관련 대고객 안내문	고객(법인 포함)의 요구불계좌(외화포함) 신규시 징구
②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정보제공 요청 및 현지실사 안내문	가사통화취급업소 앞 현지실사 실시전 안내
③ 거래정지 안내문	가상통화취급업소 앞 금융거래 중단시 안내

3. 시행일자 : 2018. 2.12(※ 은행연합회 회원은행 공동 실시)



가상통화 관련 대고객 안내문

이 안내문은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무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따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 1. 30. 시행)에 의거하여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고 주요내용 및 그와 관련된 고객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주요 정의

<p>■ '가상통화'란?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p>	<p>거래 상대방에게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나 그 표현에 관한 정보 (다음, ① 화폐·자산·음역 등으로 교환될 수 있는 전자적 정보 또는 그 표현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자에 그 용도를 제한한 것, ② 양행(쌍행) 「가상통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계약상의 이용권(통칭으로 '가상통화')을 의미하고,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자저장수단 및 정보통신망법 제15호에 따른 전자정보는 가상통화에 해당되지 않음)</p>
<p>■ '가상통화 취급업소'란?</p>	<p>가상통화를 보관·관리·교환·매매·일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p>

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정부는 2017. 12. 26. 「가상통화 무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세조각, 자금세탁, 탈세 등 가상통화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은 2018. 1. 30.부터 계좌 개설시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경우 해당 취급업소에 대해 현지실사 등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근거

-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련 법령

4 고객 유의사항

- 계좌 개설 신청 시 가상통화 취급업소 여부를 알려주셔야 하며, 추후 당 행의 계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 은행에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은행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이므로 은행은 고객의 사무소 또는 영업장 등에 방문(현지실사) 하여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고객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하여야 합니다.

〈아 래〉	
• 고객확인을 거절하거나 요청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고객 확인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고객확인을 위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실명확인 인증결제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의 위험이 특별히 높은 경우	
• 가상통화 취급업소일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	
- 가상통화 취급업소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접근경로의 통도로 사용할 경우 은행은 해당 고객을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문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위 안내문의 사본을 () □ 수령 □ 수령거절) 하였습니다.

2018. [] . [] .	고객명	(인/서명)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본 안내문은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무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따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 1. 30. 시행)에 의거하여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고 주요내용 및 그와 관련된 고객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2018. 2. 12.)



발 신 : ○○은행
일 자 : 2018. [] . [] .
수 신 : [] . [] . 고객님 귀하

제 목 :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정보제공 요청 및 현지실사 안내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행은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무기근절을 위한 대책에 따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 1. 30. 시행)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보유계좌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접근경로의 통도로 사용된 고객 포함)의 경우 강력 준수 여부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며 현지 실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 계좌	계좌번호	해당종류	명의인

2. 추가 자료 및 정보 요청 내용

- 취급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 취급업소의 실명확인 인증결제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좌
-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분사항 확인 여부
-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권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취급업소가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취급업소가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통화는 발행회사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지 여부
-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거래 관련 접근을 위해 일정한 계좌 등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는지 여부
- 결구에서 발표하는 가상통화의 관련한 권력의 준수여부
- 기타 당행이 자금세탁 및 공탈방지과업과 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절차 및 일정

- 위 추가 자료 및 정보에 대한 확인은 당행이 고객님의 사무소, 영업장 등에 방문하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정보 확인 및 현지실사 일정은 고객님의 협의를 후 진행하겠습니다.

일 자	일 자
서류제출	2018. [] . [] .
서류검토	2018. [] . [] .
현지방문	2018. [] . [] .
명 가	2018. [] . [] .
종 지	2018. [] . [] .

4. 근거

-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련 법령

5.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고객님의 거래는 거절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아 래〉	
• 현지실사를 거절하는 경우(본 안내문 수행을 회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존(본 안내문 도달일로부터 2주)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 현지실사 결과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된 경우	

경우 성격에 따라 부득이 어려운 요청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 , 연락처 [] 로써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은행
[] (인)

본 안내문은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무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따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 1. 30. 시행)에 의거하여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고 주요내용 및 그와 관련된 고객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2018. 2. 12.)





발 신 : ○○은행
일 자 : 2018. []. [].
수 신 : [] 고객님 귀하

제 목 : 거래정지 안내문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루기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시행하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은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하며, 은행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고객님과의 금융거래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당행은 이러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불가피하게 고객님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과 고객님 이용자의 업무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당행계좌(계좌번호 : [])의 입금은 2018. []. [].부터 경지될 예정이며, 출금은 2018. []. [].부터 경지될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며 당행과 거래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님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

○○은행
[] (인)

본 안내서는 전라북도지방회 자금세탁방지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영스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영남은행,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 평양으로 미정(2018. 2. 12.)한 안내서입니다.

